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88

발의연월일: 2021. 1. 22.

발 의 자:김철민·강득구·고영인

권인숙 · 김영배 · 김윤덕

서동용・송재호・신동근

이해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및 「부가가치세법」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2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정부는 2017년부터 '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'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,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선 및 재정균형 달성을 위하여정책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.

그런데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50. 4%에 불과하며,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 및 산업 집중으로 인하여 지방 정부의 재정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임.

이에 현재 부가가치세 세액에서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현행 21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세 확충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(안 제72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58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제2항 중 "100분의 21"을 "100분의 30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적용례)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9조(과세표준 및 세액) ① (생	제69조(과세표준 및 세액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	2
의 과세표준에 <u>100분의 21</u> 을	<u>100분의 30</u>
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	
다.	